

용인시 기흥구 영덕1동 공고 제 2025 - 54 호

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1.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대상자에게 부과 처분에 대한 안내문 및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
2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가. 공 고 명 :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 처분
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나. 공고기간 : 2025. 10. 17.(금) ~ 2025. 10. 31.(금)(14일간)

다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
라. 공고대상 : 이0찬(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3-*, A동 1**호)

마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 안내문 참고

3.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1동행정복지센터로(☎ 031-6193-6579)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10. 17.

영 덕 1 동 장



과태료 부과 안내문

1.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 수납 및 고지서 상단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,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3.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3%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,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.2% 증가산금이 합산되어(증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) 부과됩니다.
4. 또한, 과태료 미납 시 사업의 정지,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 (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,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,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), 신용정보 제공(신용정보업자,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), 감치 (과태료 3회 이상 체납,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,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)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5.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.

(문의: 영덕1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☎031-6193-6579)